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870

발의연월일: 2020. 9. 14.

발 의 자:정태호·김경만·김영배

양이원영・이수진・이용빈

최종윤・한병도・허 영

황운하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,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에는 보상근거가 미흡하여 연구자 간 보상에 차별이 존재함.

또한 민간 기업·연구기관은 직무발명의 승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, 국가기관은 현행법상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자동으로 승계하고 있어서 유망특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아울러 국유특허의 민간 이전 및 활용이 미흡한 실정으로 현행법에는 국유특허의 전용실시가 최대 2회(6년~10년)로 제한되어 있어, 의약·바이오 분야와 같이 사업화에 대규모의 비용과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필요한 기술의 경우 민간 이전이 어려운 상황임.

그리고 공공연구기관이 비용 부족 등으로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, 포 기하는 권리를 연구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근거가 불명확하여 유망특 허가 사장될 우려가 있음.

이에 이와 같은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유망특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의 직무발 명의 경우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며, 직무발명 승계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함(안 제10조제2항).
- 나. 국유로 된 특허권의 경우 「국유재산법」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 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실시권 설정을 한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 0조의2 신설).
- 다.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 이를 종 업원에게 알려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지 않게 하고자 함(안 제16조의2 신설).

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본문 중 "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"를 "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(이하 "공무원등"이라 한다)의 직무발명에"로, "승계하며"를 "승계할수 있으며"로, "승계한 공무원의"를 "승계한 공무원등의"로 하고, 같은항 단서 중 "승계하며"를 "승계할 수 있으며"로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공무원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) 「국유재산법」 제65조의11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에 관한 전용실시권 설정을 한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

제13조제1항 본문 중 "사용자등(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)은"을 "사용자등은"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사용자등에게"를 "사용자등(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게"로한다.

제15조제7항 전단 중 "공무원의"를 "공무원등의"로 한다.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6조의2(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양도) ①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(이하 "공공연구기관"이라 한다)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(이하 "직무발명에 대한 권리"라 한다)을 종업원등으로부터 승계한 후 이를 포기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직무발명을 완성한 모든 종업원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기를 원하는 종업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문서로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때에는 제2항의 기간이 끝나는 때부터 그 권리가 종업원등에 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공공연구기 관이 제3자와 공유한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권리에 대한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.
 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항의 기간 내에 종업원등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.

- ⑤ 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 권리를 공유한다.
- ⑥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이후 발생하는 비용(세금을 포함한다)을 종업원등에게 청구할수 있다.
- ⑦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종업원등이 일부 부담하는 대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종업원등과 협의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행 개 아 제10조(직무발명) ① (생 략) 제10조(직무발명) ① (현행과 같 유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② ----불구하고 공무원 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 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, 자(이하 "공무원등"이라 한다)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 직무발명에------승계할 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. 수 있으며------승계한 다만, 「고등교육법」 제3조에 공무워등의-따른 국·공립학교(이하 "국· 공립학교"라 한다)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「기 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| 제11조제1항 후단 에 따른 전담조직(이하 "전담 조직"이라 한다)이 승계하며, -----승계할 수 있으며----전담조직이 승계한 국·공립학 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 유로 한다. ③ • ④ (생 략) 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10조의2(공무원 직무발명 처분 의 특례) 「국유재산법」 제65 제13조(승계 여부의 통지) ① 제1 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 자등(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 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. 다 만,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 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 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 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 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 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 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.

②·③ (생 략)

제15조(직무발명에 대한 보상) ①

- ~ ⑥ (생 략)
- ⑦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

	조의11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
	고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
	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
	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에
	관한 전용실시권 설정을 한 번
	이상 갱신할 수 있다.
제	13조(승계 여부의 통지) ①
	사용
	<u> 자등은</u>
	사용자등(국가나 지방
	자치단체는 제외한다. 이하 이
	항에서 같다)에게
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	15조(직무발명에 대한 보상) ①
	~ ⑥ (현행과 같음)
	⑦ 고무워드이

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 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이나 조례로 정한다.

<신 설>

	-
	_
	_
	_
· 	_

제16조의2(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양도) ①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 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(이하 "공공연구기관"이라 한 다)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직 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 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등(이하 "직무발명에 대한 권 리"라 한다)을 종업원등으로부 터 승계한 후 이를 포기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직무발명을 완성 한 모든 종업원등에게 그 사실 을 알려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기를 원하는 종업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

수 의사를 문서로 공공연구기 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때에는 제2항의 기간이 끝나는 때부터 그 권리 가 종업원등에게 양도된 것으 로 본다. 다만,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공공연구기관이 제3 자와 공유한 경우에는 공공연 구기관의 장이 다른 공유자 모 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권리 에 대한 지분을 양도할 수 있 다.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연 구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 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항 의 기간 내에 종업원등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 다.

<u>⑤</u> 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의

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때에 는 그 권리를 공유한다.

⑥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 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를 양도한 이후 발생하는 비용 (세금을 포함한다)을 종업원등 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⑦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속 유지 하기 위한 비용을 종업원등이 일부 부담하는 대신 직무발명 에 대한 보상을 조정하는 방안 을 종업원등과 협의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 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.